20년 제57회 상표 기초 GS[B형](11월과 동일)

◆ 강사 정보

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(16년 卒)
제52회 변리사 시험 합격
김·장 법률사무소(16년~17년)
OO국제특허법률사무소(17~19년)
특허법인 OO(19년~현재)

tradepark52@gmail.com
카카오톡 1:1 채팅 방 운영[1)]

◆ 수업 특징

1. 기본서 중심의 수업: 기본서를 중심으로 기본 개념을 살피고, 주요 사례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1회부터 8회까지 기본서를 훑는 데에 집중합니다.[2)]

2. 답안지學 위주의 수업: 한글(HWP)의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의의, 취지 및 판례 등 판단기준과 사안 간의 관계에 대하여 "실제 활용이 되는 법리" 및 "앞, 뒤 논리 구성"의 측면에서 어떻게 써야하는지, 무엇을 쓰지 말아야 하는 지 등 답안지學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.

◆ 수업 자료

상상상표법(제3판) + 보충 유인물

◆ 진도표

회차	내용
1회차	총칙, 제3조 및 제33조
2회차	제33조~제35조
3회차	절차(이익제도) 및 상표권
4회차	상표권의 침해
5회차	심판 및 소송
6회차	마드리드 의정서, 특수표장
7회차	전 범위
8회차	전 범위

◆ 참고자료

다음 [그림 1]과 같이 같이 한글(HWP)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답안지 내 문장마다 코멘트를 달아두어 어떠한 점에 주의하여야 하는지, 어떠한 논리 전개가 필요하지 설명합니다.

◆ 2차 합격을 위한 최소한의 정리

2차 상표법을 준비하는 데에는 기출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수준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습을 하여야 하나,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상표법 주요 사례 1개 내지 2-3개를 섞은 정도의 수준입니다. 동차스럽게, 동차에 맞게 '나올 만한 논점'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.

---

1) 카카오톡 > 오픈채팅 > 1:1 채팅 > "박진호" 검색 > 오픈채팅방 개설되어 있음(언제든 질문 환영)
2) 기초GS[B형]에서는 실제 判例 원문 및 관련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원문 1독 기본서상의 내용은 필수불가결한 정도로 설명하고, 단순 기본서 1독하는 것은 아니며, 아울러 GS 문제에서는 判例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고, 주요 유형/테마별로 나누어 풀이합니다.

[그림 1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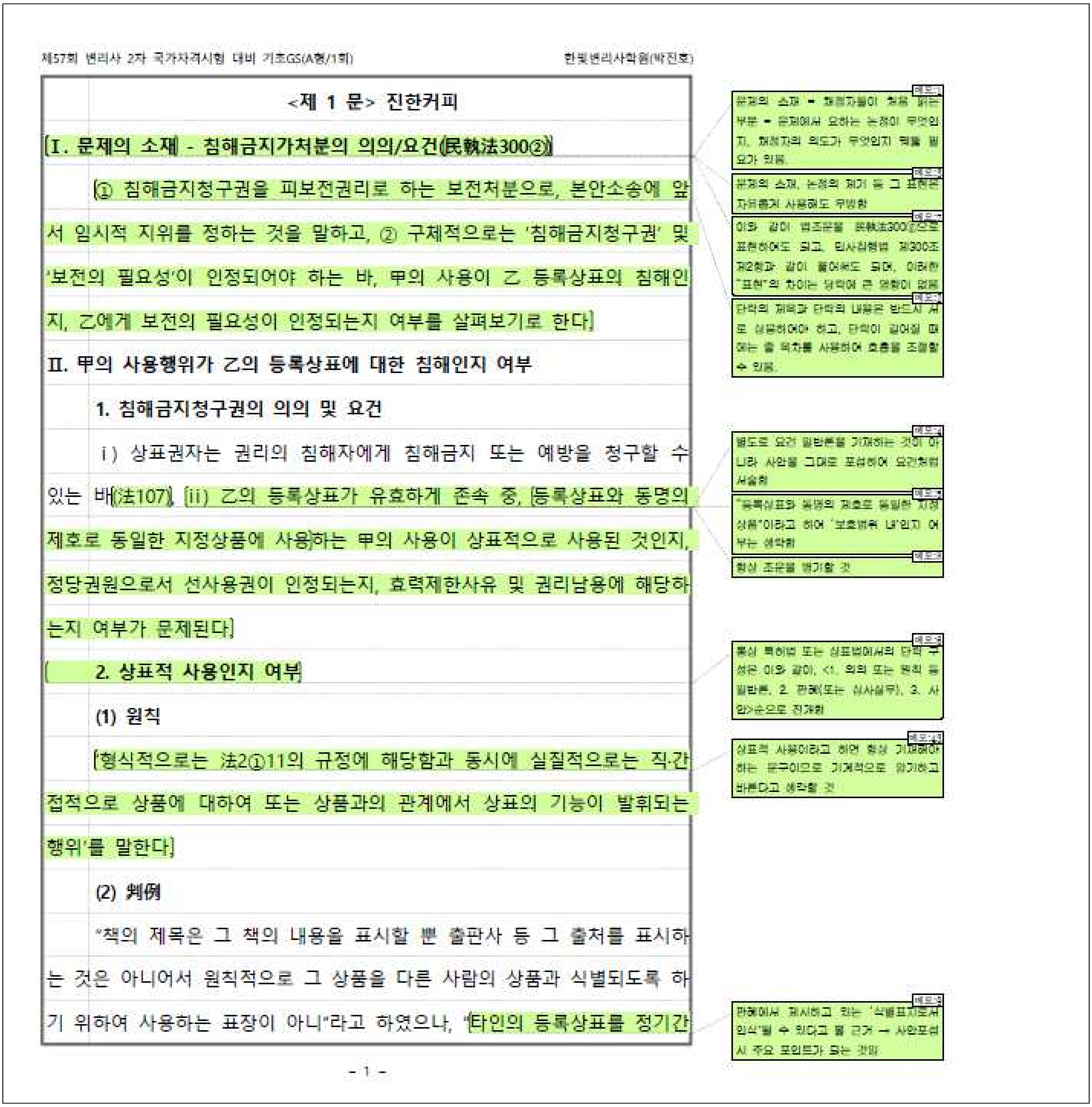

제57회 변리사 2차 국가자격시험 대비 기초GS(A형/1회) 한빛변리사학원(박진호)

<제 1 문> 진한커피

I. 문제의 소재 - 침해금지가처분의 의의/요건(民執法300②)

①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으로, 본안소송에 앞서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하고, ② 구체적으로는 '침해금지청구권' 및 '보전의 필요성'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, 甲의 사용이 乙 등록상표의 침해인지, 乙에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.

II. 甲의 사용행위가 乙의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

1. 침해금지청구권의 의의 및 요건

ⅰ) 상표권자는 권리의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바(法107), ⅱ) 乙의 등록상표가 유효하게 존속 중, 등록상표와 동명의 제호로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甲의 사용이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인지, 정당권원으로서 선사용권이 인정되는지, 효력제한사유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.

2.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

(1) 원칙

형식적으로는 法2①11의 규정에 해당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직·간접적으로 상품에 대하여 또는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행위'를 말한다.

(2) 判例

"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"라고 하였으나, "타인의 등록상표를 정기간

- 1 -

메모: 문제의 소재 = 채점자들이 처음 읽는 부분 = 문제에서 요하는 논점이 무엇인지, 채점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적을 필요가 있음.

메모: 문제의 소재, 논점의 제기 등 그 표현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무방함

메모: 이와 같이 법조문을 民執法300②으로 표현하여도 되고,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과 같이 풀어써도 되며, 이러한 "표현"의 차이는 당락에 큰 영향이 없음

메모: 단락의 제목과 단락의 내용은 반드시 서로 상응하여야 하고, 단락이 길어질 때에는 줄 띄기를 사용하여 호흡을 조절할 수 있음.

메모: 별도로 요건 일반론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을 그대로 포섭하여 요건처럼 서술함

메모: "등록상표와 동명의 제호로 동일한 지정상품"이라고 하여 '보호범위 내'인지 여부는 생략함

메모: 항상 조문을 병기할 것

메모: 통상 특허법 또는 상표법에서의 단락 구성은 이와 같이, <1. 의의 또는 원칙 등 일반론, 2. 판례(또는 심사실무), 3. 사안>순으로 전개함

메모: 상표적 사용이라고 하면 항상 기재해야 하는 문구이므로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바른다고 생각할 것

메모: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'식별표지로서 인식'될 수 있다고 볼 근거 → 사안포섭 시 주요 포인트가 되는 것임